



TaxFlash

Tax Indonesia / February 2025 / No. 06

Preliminary tax refund:
an update^{P1}

Updates on customs
and tax provisions for
Consigned Goods
(“barang kiriman”)^{P2}

조기 세금 환급 규정에 대한 업데이트

2024년 12월 27일, 재무부 장관(MoF)은 PMK-39¹의 세 번째 개정안인 PMK-119²를 통해 조기 세금 환급에 대한 개정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조기 세금 환급은 특정 요건 납세자(Golden Taxpayers), 환급 금액이 적은 납세자, 그리고 저위험 부가세(VAT) 과세대상 법인에게 제공됩니다. 각 납세자에 대한 논의는 [TaxFlash No.05/2018](#), [TaxFlash No.14/2019](#), [TaxFlash No.04/20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MK-119는 행정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특정 요건 납세자 (Golden Taxpayer)

PMK-119에 따르면, 국세청(DGT)이 VAT 법 제 9 조(4b)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즉, 수출 활동, VAT 징수자에게 VAT 과세/비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을 수행하는지 먼저 검토한 뒤, 특정 요건 납세자가 조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 연도 말 이외의 기간 내 제출된 조기 세금 환급 신청에 적용됩니다.

¹ MoF Regulation No.39/PMK.03/2018 (“PMK-39”) dated and effective from 12 April 2018 as lastly amended by MoF Regulation No.209/PMK.03/2021 (“PMK-209”) dated 30 December 2021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22

² MoF Regulation No.119 Year 2024 (“PMK-119”) dated 27 December 2024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25

b. 특정 요건 납세자이면서 저위험 부가세(VAT) 과세대상 법인인 경우

PMK-119는 특정 요건 납세자가 저위험 부가세(VAT) 과세대상 법인(Pengusaha Kena Pajak Risiko Rendah)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 세금 환급 절차는 저위험 부가세(VAT) 과세대상 법인에 대한 규정을 따르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c. 전자적 조기 세금 환급 신청 방법

PMK-119에서는 Core Tax 행정 시스템(Core Tax 시스템) 내 납세자 포털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조기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Core Tax 시스템을 통해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우편, 택배 또는 배송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d. 경과 규정

PMK-119는 2024년 회계 연도까지 관련된 조기 세금 환급 신청 절차는 과거 PMK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물품("barang kiriman")에 대한 관세 및 세금 규정 업데이트

2025년 2월 3일, MoF는 PMK-96³의 두 번째 개정안인 PMK-4⁴를 발표하면서 위탁 물품("barang kiriman")에 대한 관세 및 세금 규정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PMK-96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xFlash No.11/2023](#)을 참조하십시오.

본 TaxFlash는 PMK-4에 따른 모든 개정사항이 아니라, 주요 사항을 위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관세 및 수입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위탁 물품

PMK-96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며 위탁화물운송장(Consignment Note, CN)과 함께 신고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및 수입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 본선 인도 조건(FOB) 가격이 미화 3 달러 이하인 경우; 및
- FOB 가격이 미화 3 달러 초과 미화 1,500 달러 이하인 경우

³ MoF Regulation No.96 Year 2023 ("PMK-96") dated 18 September 2023 and effective from 17 November 2023 as amended by MoF Regulation No.111 Year 2023 ("PMK-111") dated 16 October 2023 and effective from 17 October 2023

⁴ MoF Regulation No.4 Year 2025 ("PMK-4") dated 3 February 2025 and effective from 5 March 2025

A. 관세 및 수입 세제 혜택 대상인 위탁 물품의 유형

PMK-4 에서는 기존의 세제 혜택 대상품목 외 다음의 물품 유형을 추가하여 관세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1. 하지 순례자(Haji pilgrims)들이 보내는 위탁 물품; 및
2. 대회/수상 목적으로 보내지는 위탁 물품

신규 대상 품목에 대한 세제 혜택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위탁 물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관세 면제;
- 수입 관세가 면제된 품목에 대해 VAT/사치품세(LST) 및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또한, 별도 세금 면제 증명서(Surat Keterangan Bebas) 없이도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은 7.5%의 수입 관세와 일반 부가가치세 및 사치세가 부과됩니다.

자격 요건

1. 하지 순례자(Haji pilgrims)들이 보내는 위탁 물품

본 유형에 대한 세제 혜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하지(Haji) 시즌 동안 하즈 순례자에 의해 발송된 물품;
- b) CN 은 첫 비행 그룹 출발일 이후부터 해당 하지(Haji) 시즌의 마지막 비행 그룹 귀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 c) 포장 크기는 최대 60x60x80 cm 이어야 함;
- d) 한 번의 발송 당 최대 한 개의 패키지 허용;
- e) 하지(Haji) 시즌 동안 최대 두 번 발송되어야 함;
- f) 발송당 FOB 가격이 미화 1,500 달러 이하이어야 함.

2. 대회/수상 목적으로 보내지는 위탁 물품

본 유형에 대한 세제 혜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스포츠, 과학, 예술, 문화, 종교 등을 포함한 국제 대회/수상에서 받은 상품;
- b) 물품의 발송자/수령자는 상품을 받은 인도네시아 시민이어야 함;
- c) 인도네시아 정부 부처/기관/단체, 외국 주최자 및/또는 대중 매체가 발행한 대회/수상 참여를 증명하는 문서로 뒷받침되어야 함;
- d) 복권/도박을 통해 받은 자동차, 과세 재화, 상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e) 대회/수상 당 최대 하나의 메달/트로피 및/또는 다른 상품 한 개만 가능함.

B. FOB 가격이 미국 3 달러 초과 1,500 달러 이하인 수입 물품에 대한 개정사항

PMK-96에 따르면 과거 해당 범주에 속하는 수입 물품은 7.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단, 서적, 화장품, 자전거 등과 같은 특정 물품은 최혜국(Most Favoured Nation)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되며,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PMK-4에서는 해당 예외 범주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 물품별로 0%, 15%, 또는 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5% 및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만 5%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PMK-4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긴급 관세(Safeguard), 보복 관세, 그리고/또는 상계 관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2. 수출된 위탁 물품의 재수입

PMK-4는 다음의 이유로 수출 후 재수입되는 위탁 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a) 본 수출이 판매계약에 따르지 않은 경우;
- b) 구매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c)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 d) 대상국의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e)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경과 규정

- 이미 제출되었지만 등록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CN의 경우, PMK-4 규정을 따릅니다.
- 2025년 3월 5일 이전에 제출되어 등록 날짜가 지정된 CN의 경우, PMK-96 규정을 따릅니다.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c@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pwc.com	Hendra Lie hendra.lie@pwc.com	Riyadi riyadi.riyadi-c@pwc.com
Adrian Hanif adrian.hanif@pwc.com	Hisni Jesica hisni.j.jesica@pwc.com	Runi Tusita runi.tusita@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pwc.com
Ali Widodo ali.widodo@pwc.com	Irene Satyanagara irene.satyanagara@pwc.com	Sukma Alam sukma.alam-c@pwc.com
Aman Santosa aman.santosa-c@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pwc.com	Surendro Supriyadi surendro.supriyadi-c@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pwc.com	Susetiyo Putranto susetiyo.putranto@pwc.com
Angeline angeline.angeline@pwc.com	Made Natawidnyana made.natawidnyana@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c@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c@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pwc.com
Avinash Rao a.rao@pwc.com	Marlina Kamal marlina.kamal@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pwc.com	Nicholas Sugito nicholas.sugito@pwc.com	William Christopher william.christopher@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pwc.com	Nikolas Handradjid nikolas.handradjid@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pwc.com	Novie Mulyono novie.mulyono@pwc.com	Yuliana Kurniadja yuliana.kurniadja@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pwc.com
Esa Perdana esa.perdana@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pwc.com	

www.pwc.com/id



PwC Indonesia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5 PwC Tax Indonesi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